연구용역 계약서

REF : 1908081A

주식회사 한국에이티아이 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와 연구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한다.

**제1조(계약의 목적)** 본 계약은 “갑”의 의뢰를 받은 “을”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SC-1 blending chemical, Diluted HF blending chemical 및 Diluted NH4OH blending chemical의 분석방법과 분석 specifications(농도범위, 재현성, 정확성 등을 상세히 규정함)을 만족하는 농도계의 개발 구성 제안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계약의 범위)** 본 계약은 별첨 1의 “농도계 국산화개발 용역”의 SC-1 blending chemical, Diluted HF blending chemical 및 Diluted NH4OH blending chemical이다.

**제3조(기간)** 본 계약은 기간은 2019.08.26 ~ 2019.12.15 (이하 “연구기간”이라 한다)로 하기로 한다. 단 연구기간은 “갑”과 “을”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.

**제4조(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)**

본 계약에 의하여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금사천오백만원(45,000,000원, 부가세별도)로써, “갑”은 다음과 같이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
1) 선급금(50.0%) : 이천이백오십만(2,250,000)원정. (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)

1. 잔 금(50.0%) : 이천이백오십만(2,250,000)원정. (최종보고서 제출 이후 15일 이내)

**제5조(연구보고서 제출)**

1. “을”은 연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보고서 2부를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연구기간 중에 제출하는 보고서 및 자료는 양자 합의에 의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2. “을”이 제출한 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이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“갑”이 판단하는 경우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그 사항을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연구결과의 귀속)**

1.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연구결과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공동 소유로 하되 지분 비율을 합의하여 결정한다.
2. 전항의 연구결과의 실시에 대하여 “을”은 그 발생일(특허 출연의 경우 출원일)로부터 50년 간 “갑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며, 그 실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실시 계약에 의한다. 계약 금액은 1,000,000원을 넘지 아니하며 계약전이라도 “갑”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.
3.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의 주체는 “갑”이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“갑”이 부담한다.

**제7조(물품의 귀속)**

1. 필요자재는 “갑”의 소유로 연구기간 동안 “을”이 사용하고 기간 완료 후 “갑”이 인수한다.
2.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“갑”의 소유로 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항의 시작품을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만약 동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“을”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인수를 최고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도 “갑”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전항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.

**제8조(명칭사용)**

“갑”은 “을”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연구로 “갑”이 취득한 정보 및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원본 또는 복제물을 광고, 판매촉진,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소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“을”의 명칭 또는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9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**

1. “갑”과 “을”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2. “갑”은 연구결과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“을”에게 교육, 기술지원,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구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연구비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자의 합의에 의하여 “을”에게 지급한다.

**제10조(비밀보장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계약상 지위 양도의 제한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상호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**제12조(계약의 변경)** 본 계약서의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3조(비밀보장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.

**제14조(계약의 해지)**

1. (“갑”의 해지) “을”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, “갑”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, 위 기간 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2. (“을”의 해지) “갑”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“을”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“갑”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(해지협의)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“을”은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 시가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 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“갑”에게 제출하고, 연구비의 미집행분에 한하여 “갑”에게 반환한다.
4. (기타)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“갑”과 “을”의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.

**제15조(불가항력)** 본 계약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16조(해석 및 분쟁해결)**

1.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통상의 관행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2. 양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 소재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.

**제17조(계약의 효력)**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.

첨부: 농도계 국산화개발 용역 1부 및 필요자재 리스트.

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각각 기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8월 26일

**(갑)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, 1010호 (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)**

대 표 이 사 홍 기 우 (인)

**(을)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**

단 장 차 주 헌 (인)

**별첨) 연구 용역비 내역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비목 | 금액 | 비고 |
| 인건비 | 20,000,000 | 도영락, 이찬우, 학생1 |
| 재료비 | 12,000,000 | List 제공 |
| 연구활동비 | 3,000,000 |  |
| 연구과제추진비 | 2,000,000 |  |
| 간접비 | 3,000,000 | 학교 overhead |
| incentive | 5,000,000 |  |
| 합 | 45,000,000 |  |